

『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 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이유

-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이 2005.3.24 개정되어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 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제외할 수밖에 없으며,
- 본 조례 9조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“불미스러운 행위, 품행이 극히 불량”의 문구를 삭제하여, 조례시행의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의무교육의 확대로 중학교 관계규정 삭제(안제1조, 안제5조제2항)
- 불명확한 지급정지 사유 삭제(안제9조제1항 제1호, 제3호)

□ 검토의견

-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고,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장학생의 자격이 제3조에서 “유공 장학생” 과 “특기장학생” 으로 규정되어 있고, 제5조에서 “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” 는 선발순위 조정의 1개 사항일 뿐이고,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한다면 제1조(목적)의 “경제적 사정” 이란 조문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아울러 제3조 제1항도 “장학생은 통장의 자녀” 는 “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” 로 개정하여 위촉된지 얼마되지 않은 통장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2. 20

보고자 : 김 찬 재

【 참고자료 】

- 관련 법조문
- 수정의견

관련 법조문

□ 교육기본법

제8조(의무교육)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
(개정2005.3.24)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23조(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)①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1999.8.7, 2001.10.20, 2005.9.29>

4.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
부 칙 <제17390호, 2001.10.20>

제2조(특별시, 광역시, 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)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.

